

1999. 10. 21

제89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사회도시위원회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화순)

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와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설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업무 및 기능(안 제3조)

- 여성복지사업 ○ 아동복지사업 ○ 청소년 복지사업
- 노인복지사업 ○ 장애인 복지사업
- 주민건강을 위한 체육진흥사업
- 지역 주민자치 복지증진 사업
-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- 직 원 : 구·동에서 직영 시 운영관리를 위한 직원을 배치하고 위탁시는 수탁자 책임 하에 운영관리

- 이용자의 범위 :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과 기타 구청장의 사용 승인을 득한 자(안 제5조)

○ 운영 및 관리 (안 제8조)

- 운 영 : 구청장이 운영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,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
- 보 조 : 위탁 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

- 감 독 : 연 1회 이상 정기감독 실시, 필요시 수시 지도감독

3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참여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설치하게 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 기반조성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로,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복지센터로서의 제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,

○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복지센터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.